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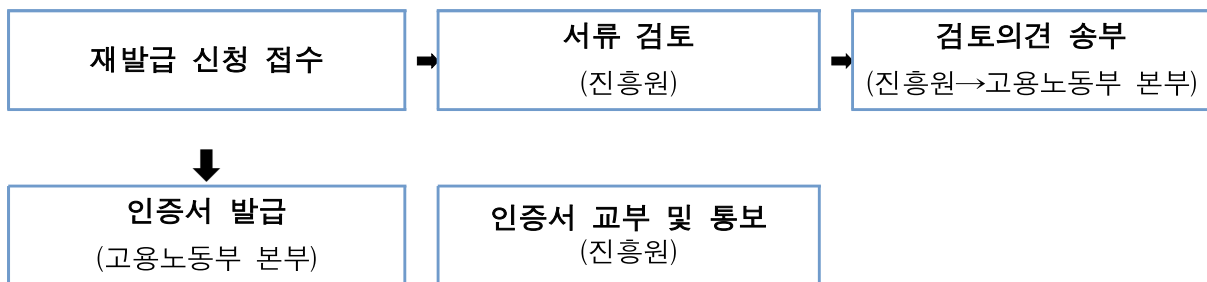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I | 인증서 재발급

1. 근거 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 (단순변경 사항)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
 - (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
 - *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할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보고 및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발급
- 201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매뉴얼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문서자료> 도서 (제4장 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 ④ 인증서재발급)



2. 관련 조치사항

- 필요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 인증서 재발급 요건은 충족하나, 인증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은 하되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

3. 인증서 재발급 사항

① 상호명 변경

-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칭 변경을 사유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 제출 서류 안내 】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1]
 -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도로명 주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기관 명칭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기관 명칭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회의록만 인정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신)정관 (사본)
 -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 반납)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② 소재지 변경

- 사회적기업이 소재지 이전을 사유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 제출 서류 안내 】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1]
 -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도로명 주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소재지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회의록만 인정
 - 임대차 계약 관련 증빙 문서 (사본)
 - (신)정관 (사본)
 - 정관에 명기된 소재지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미제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 반납)
-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③ 대표자 변경

- 사회적기업이 대표자 변경을 사유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

【 제출 서류 안내 】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1]
-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도로명 주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 대표자 변경 관련 회의록 (사본)
 - 정관 상 '대표자 변경' 관련 심의·의결권이 있는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회의록만 인정
- 대표자 이력서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2]작성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식 변동 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 반납)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④ 조직형태 변경

- (공통사항) 사회적기업이 조직형태 변경을 사유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변경 사실과 유급근로자 고용승계 및 인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제반서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

- 검토 결과 조직형태 변경시 주된 사업 및 근로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사회적기업과 연관성 없는 전혀 다른 조직형태라 판단될 경우 별도 인증을 받을 것을 안내, 기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인증 취소·반납업무지침에 따라 조치
- 인증서 재발급 요건은 충족하나, 인증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은 하되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조치

- 모법인(비영리법인) 자체로 인증 받은 후 사업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분야를 영리기업으로 전환(법인 분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

- 기업 분할시: 별도 인증 필요(기업분할은 해당 법인의 사회적·경제적 가

치가 인증취지와 같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분할된 기업은 별도 인증 필요)

- 포괄적 양도양수를 통해 해당 사업분야를 독립법인 형태로 독립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형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 인증은 불필요

【 제출 서류 안내 】

-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1]
- (신)사업자등록증 (소재지 - 도로명 주소)
- 소멸 기업의 ‘폐업사실증명’
- (신)정관 (공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법인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공증, 사본)
 -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의 모법인’과 ‘신규 법인’ 간 계약
- (조직형태 변경 전) 이사회 등 회의록 (공증)
 - 조직형태 전환 관련 내용 확인
- (조직형태 변경 후) 이사회 등 회의록, 이사회 명부
 - 근로자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의사결정구조 구성
- (조직형태 변경 후) 주주명부 (상법상회사)
- 4대보험 가입 이력
 - 유급근로자 고용유지 확인
 - 기존 사회적기업, 신규 법인 각각 제출
- (조직형태 변경 후) 급여대장, 급여이체 내역
 - 신규 법인 유급근로자 확인
-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 반납)

< 추가 제출 서류 >

사업단이 모법인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경우

- 사업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조직형태 전환 관련 내용 확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설립 인가증

※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우편으로 송부 할 것

4. 접수처

접수처	연락처	접수 방법	주소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전화번호: 031-697-7723 팩스번호: 031-697-7761	방문 및 우편접수 (등기 송부)	(461-721) 경기도 성남 시 수정로 157 한화생명 빌딩 인증지원팀

II 정관 등 변경신고

1. 근거 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 (정관 등)
- 201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매뉴얼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문서자료> 도서 (제4장 사회적기업 인증 사
후관리 ⑤ 정관 등 변경신고)

2. 정관 등 변경신고 사항

- 목적 사업 사항
- 명칭·소재지 사항
 - * 정관에 명기된 소재지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아님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재원 조달 사항
- 사회적기업의 회계 사항
-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사항
 - * 경우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할 진흥원에 신고 [서식3]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3조 (과태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2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조직형태에 따른 제출 서류 안내

- 상법상 회사 ·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 · 사업단 등

【 제출 서류 안내 】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2]
- 총회 · 이사회 회의록 (공증)
 - ※ 정관 상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권이 있는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만 인정
- (신) 정관
- 신·구조문대조표 - 정관개정사항 표기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민법상 사단 및 재단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복지법인·공인법인

【 제출 서류 안내 】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2]
- 주무관청 정관 변경 허가(인가)서
 - ※ “주무관청”이란 사회적기업 설립 당시 허가(인가)를 받은 행정관청(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 관할 고용센터 아님)
- (신) 정관
- 신·구조문대조표 - 정관개정사항 표기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 사회적기업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 지점은 본점과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유지
- 단순 체인점이나 가맹점은 개별 독립된 조직으로 지점에 미포함

【 제출 서류 안내 】

-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신고서 [서식2]
- 지부(지점·분사무소) 설립 및 폐업 관련 회의록 (이사회 등)
- 사회적기업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에 관한 사항>에 지부(지점·분사무소) 등기
- 지부(지점·분사무소)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 구분코드(등록번호 두 번째 번호)
 - 비영리(사단·재단) 법인의 지점: 82
 - 영리법인의 지점: 85
- 지부(지점·분사무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5. 접수처

○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서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상 '관련서식'에서 다운 가능

접수처	연락처	접수 방법	주소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전화번호: 031-697-7723 팩스번호: 031-697-7761	방문 및 우편접수 (등기 송부)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157 한화생명빌 딩 7층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인증지원팀

<서식1>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자 성명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변경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변경된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된 소재지)			

재발급 신청 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원본 1부.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관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데이터 반영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회적기업 인증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지자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기업 대표자 변경 건에 한하여 작성 및 송부 바라며,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바랍니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예시)

(2010.00.00.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임원과 이사회</p> <p>제21조 ~ 제33조 (생략)</p>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임원과 이사회</p> <p>제21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이사회)</p> <p>③ 이사장은 분기별 1회 정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